

제328회 임시회
2014.03.20.(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03.20.(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4년 03월 03일

다. 회부일자: 2014년 03월 05일

라. 상정일자: 2014년 03월 19일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국장 김화석)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3.1.23.)으로 2014. 7. 1.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역을 종전 교육부령에 따라 “청주시”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4. 7. 1. 청주시와 청원군이 폐지되고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으로써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통합 청주시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현행 “청주시” 지역으로만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
- 2)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안 제3조)
- 3) 기타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대회)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7. 1.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을 합친 통합 청주시가 출범 되나, 현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청주시는 교육감³⁾이고, 청원군은 학교장⁴⁾으로 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통합지역에 맞게 동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2조에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통합 청주시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청주시”로 정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예고 등 사전 조사에

3)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2.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제4조에 따라 조례제정 시 까지 적용

4) 초·중등교육법 제77조제1항

서 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 없고, 지역 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3조에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학생·학부모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조례를 제정한 타 지역⁵⁾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5) 타지역 여론조사 찬성율 조사(서울: 3분의 2이상 , 경기: 과반수 이상, 충남: 65%이상, 강원도: 60% 이상)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4.1.1.][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1. 삭제 <2010.6.29>
 2.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부칙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후 대조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p>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 ~ 8. (생략)
9. 충청북도 청주시
10. ~ 13. (생략)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 [법률 제11624호, 2013.1.23.]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 구역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시행일 : 2014.7.1] 제2조

부칙 <법률 제11624호, 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중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 ⑩ (생략)